

영국 명예훼손법의 ‘중대한 손해’ 요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원고의 명예 보호에 치중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외국 인들까지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런던은 ‘명예훼손 도피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명예훼손법 개정을 요구하던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2013년 영국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신설된 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해석이 더해지는 가운데, 2019년 영국 대법원은 라쇼(Lachaux)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보통법(common law) 하에서 인정되던 일반적 손해의 추정 원칙을 변경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되는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잠재적으로 해하거나 해할 경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법 개정 이전에 내려진 두 건의 중요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 라쇼 사건의 의미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영국 명예훼손법

가. 보통법상 엄격책임주의

전통적으로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중세의 교회법과 군주 주권 시대의 형사 명예훼손법의 영향을 받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명예를 보호하는 데 치중했다.¹⁾ 영국에서는 왕이나 귀족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선동적 명예훼손(seditious libel)'으로 처벌하던 역사가 있었는데, 가령 1275년 웨스트민스터법(Statute of Westminster 1275)은 '스칸달럼 마그나툼(scandalum magnatum)' 조항을 통해 왕과 귀족 및 법관 등에 대한 비판적 언사를 한 자를 처벌했다. '스칸달럼 마그나툼' 조항은 '누구도 왕과 그의 신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짓 이야기를 발설하거나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선동적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잠재우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 명예훼손법은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기보다는 권력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법체계였다. 그 결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는 발언은 거짓이고 악의적인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는 추정된다고 하는 엄격책임 규칙(strict liability rule)이 형성되었다. 즉,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했음을 주장할 경우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임과 발화자의 악의가 추정되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가 진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발화자가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항변이나 특권을 주장해야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피고 측이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²⁾

나. 명예훼손 소송 투어 현상

엄격책임주의 하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1) 발화자의 악의, 2) 진술 내용의 허위, 3) 진술 공표로 인한 손해가 추정된다. 특히, 손해 추정의 경우, 피고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공표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추정되고 배심은 증거자료 없이도 실질적 손해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³⁾을 통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이 수립된 이래로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지만, 영국에서는 공인이라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국과 미국의 이러한 차이는 '명예훼손 소송 투어(libel tourism)'라는 특이한 현상을 발생시켰다. '명예훼손

1) 박용상 (2019). <영미 명예훼손법>. 파주: 한국학술정보.

2) Geoffrey Robertson and Andrew Nicol (2002). <Media Law>. London: Sweet & Maxwell.

3)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손 소송 투어'란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면 '현실적 악의' 원칙으로 인해 패소할 확률이 높은 공적 인물인 원고가 상대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높은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재력이 뒷받침되는 경제인이나 연예인이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기사를 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여행하듯이 영국으로 건너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명예훼손 소송 투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대표적 '명예훼손 소송 투어' 사례로는 미국 작가 레이첼 에른펠트(Rachel Ehrenfeld) 사건이 있다. 대(對)테러 전문가인 에른펠트는 '악마를 편당하기'라는 책을 출간하여 어느 사우디 부호가 이슬람 테러단체 알 카에다(Al-Qaeda)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책에서 거명된 사우디 부호는 자금 지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에른펠트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출간된 에른펠트의 책은 영국에서 23부가 판매되는 데 그쳤음에도 사우디 부호는 미국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영국 법원은 에른펠트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궤석재판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만 파운드와 소송비용 8만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에른펠트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타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위협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졌다.⁴⁾ 2010년 미국 의회는 SPEECH ACT(Securing the Protection of our Enduring and Established Constitutional Heritage Act)를 제정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명예훼손 판결은 그에 적용된 외국법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비슷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법원을 통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외국에서 명예훼손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서 체포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하지 못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영국 명예훼손법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영국 의회는 명예훼손법 개정을 예고하게 되었다.

3. 영국 명예훼손법 개혁의 과정

2013년 영국 명예훼손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단기간에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엄격한 명예훼손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익에 기여하는 언론 보도의 경우 더욱 두터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보통법적 전통을 따르던 영국 명예훼손법의 변화의 바람은 레이놀즈(Reynolds) 판결⁵⁾과 자밀(Jameel) 판결⁶⁾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4) Harry Melkonian (2011). <Defamation, Libel Tourism and the SPEECH Act of 2010: The First Amendment Colliding with the Common Law>. Amherst: Cambria Press.

5) Reynolds v. Times Newspapers Ltd [1999] UKHL 45.

6) Jameel v. Wall Street Journal Europe [2006] UKHL 44.



1994년 영국 타임즈 신문은 전 아일랜드 수상인 알버트 레이놀즈(Albert Reynolds)가 공무 관련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레이놀즈 전 수상은 타임즈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이에 타임즈 신문은 상고했고, 영국에서 2009년 대법원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최고법원의 역할을 맡고 있던 귀족원(House of Lords)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보도 내용이 강력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political expression)’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면책될 수 있을지가 논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귀족원은 정치인의 명예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정치적 내용을 다룬 보도라고 하여 언론사에 일괄적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언론사를 위해 특별한 항변으로서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responsible journalism)’ 기준을 제시하여 언론 보도가 책임감 있게 행해졌을 경우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언론 보도가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열 가지 기준은 1) 사안의 심각성, 2) 정보의 성질과 보도 주제의 공익성 관련성의 정도, 3) 정보원, 4) 정보의 상태, 5) 정보의 검증단계, 6) 사안의 긴급성, 7) 원고에게서 코멘트를 얻고자 노력했는지 여부, 8) 기사가 원고 측 이야기의 핵심을 싣고 있는지 여부, 9) 기사의 어조, 10) 발행 시점 등 상황이다. 이러한 열 가지 요건은 일명 ‘레이놀즈 테스트(Reynolds test)’라고 불리는데, 이후 영국의 언론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해 사건에서는 해당 보도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레이놀즈 전 수상의 해명을 싣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되었다. 결국, 타임즈 신문은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언론의 공익 보도를 위한 제한적 특권인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의 기준은 2006년 자밀 사건에서 다시 검토되었다. 2002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 갑부 모하메드 자밀(Mohammed Jameel)이 알 카에다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보도했고 자밀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놀즈 테스트’가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귀족원은 1) 기사 주제의 공익 관련성, 2) 명예훼손적 표현의 정당화 가능성, 3) 취재 및 보도 과정의 공정성 및 책임 있게 행해졌는지 여부로 구성된 세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한 결과, 1) 당해 보도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이 있으며, 2) 자밀의 이름은 기사의 중대한 요소로서 기사에 포함되어 공개될 필요가 있었고, 3)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한 사실과 자밀 측에 반론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서 면책될 수 있었다.

2013년 전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명예훼손법⁷⁾은 레이놀즈 판결과 자밀 판결에 의해 성립된 공익 보도에 관한 항변을 제4조에 법제화하였다. 공익 사항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에 대한 제4조는 문제가 된 표현이 중대한 공익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공익과 연관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음을 피고가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며 보통 법상 ‘레이놀즈 항변’을 이 조항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한다.⁸⁾ 명예훼손법 개정 이후 영국 언론은 더 자유롭게 탐사보도나 기타 공익에 기여하는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4. 대법원의 라쇼 판결

2013년 개정된 명예훼손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항들은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공익 사항 공표에 관한 제4조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운영자 책임에 대한 제5조는 새로운 면책규정을 만든 것이라서 어떤 경우에 운영자가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제1조도 신설된 조항이다.

7) 2013년 영국 명예훼손법 조항에 대한 번역과 해설은 박용상 (2015). 영국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15년 여름호, pp. 86-99 참조.

8)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

- (1)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음을 입증하면 피고를 위한 항변이 된다. (a) 불만 대상 진술이 공익 사항에 관한 진술이었거나 그 일부를 이룬 것 (b) 불만 대상 진술의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믿었음
-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제1항에 언급된 사항을 입증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 (3) 불만 대상 진술이 원고가 일방 당사자였던 논쟁의 정확하고 공평한 설명이었거나 그 일부였던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공표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피고가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가 그에 의해 전달된 비난의 진실을 입증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시해야 한다.
- (4) 피고가 불만 대상 진술의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편집적 판단을 참작하여야 한다.
- (5) 의문을 피하기 위해 본조에 의한 항변은 불만 대상 진술이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행사될 수 있다.
- (6) 레이놀즈 항변으로 알려진 보통법상의 항변은 폐지한다.

제1조 중대한 손해

- (1) 진술은 그 공표가 원고의 명예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2) 본조의 취지에서 영리를 위해 거래하는 주체의 명예에 대한 손해는 그것이 그 주체에게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중대한 손해가 아니다.

이 조항은 무엇이 중대한 손해인지, 중대한 손해는 어떻게 입증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그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2014년 *Cooke 사건*⁹⁾에서 법원은 원고의 회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신문이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손해가 추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가 누군가를 테러리스트나 아동 성도착자라고 칭한 정도가 아니면 중대한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마저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러한 판결에 당황한 영국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십사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그 대신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데이터보호법 위반, 괴롭힘(harassment) 등 다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중대한 손해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9년 영국 대법원은 라쇼(Lachaux)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명예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실질적인 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하고 명예훼손적 발언 자체로부터 손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¹⁰⁾ 이 사건은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서 일하는 프랑스 국적자인 브루노 라쇼(Bruno Lachaux)와 전 처인 영국 여성의 이혼 과정에 대한 스캔들을 영국 신문들이 보도하면서 비롯되었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인디펜던트, 이브닝 스탠다드 등의 영국 신문들은 라쇼가 가정폭력을 휘둘렀으며 전처가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아들의 여권을 숨기는 한편 전처가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라쇼는 영국 신문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이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신문사들의 항변을 거부하고, 언론이 라쇼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문사들은 항소했으나 2017년 9월 2심 법원도 언론 보도가 라쇼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을 맡은 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명예훼손적이라고 인정된다면 중대한 손해

9) *Cooke & Anor v. MGN Ltd & Anor* [2014] EWHC 2831 (QB).

10) *Lachaux v. Independent Print Ltd* [2019] UKSC 27.



의 발생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는 중대한 손해의 입증이 보통법상의 손해보다 약간 기준이 강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서 이는 향후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원고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대법원은 언론 보도가 라쇼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손해에 대한 항소법원의 해석을 뒤집었는데, 어떠한 표현이 명예훼손적이라고 해서 중대한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된 표현으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대한 손해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보도된 상황과 맥락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는데 가령 명예훼손적 표현이 보도된 규모, 명예훼손적 표현의 보도가 피해자 주변인들의 주목을 끌었는지 여부, 표현 자체의 심각성 등과 같은 요소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라쇼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2013년 명예훼손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켜 명예를 보호하던 보통법적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영국 시민이 아닌 자가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얻으려던 악습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개정된 명예훼손법 제1조는 자밀 판결의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실질적인 팩트를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보통법상의 손해 추정의 원칙이 깨어졌음이 이번 판결

을 통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매우 작은 규모로 보도되었거나, 그 표현을 접한 자들이 이를 믿지 않았거나, 원고가 아무런 평판을 갖지 못하는 자일 경우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행된 신문 부수, 발행으로 인해 라쇼 주변인들이 보도내용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및 표현 자체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라쇼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하급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라쇼가 승소하였지만, 중대한 손해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5. 맺음말

향후 영국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사용된 단어나 표현의 의미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가져왔는지 여부에 달려있음이 이번 판결로 인해 명확해졌다. 또한 원고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언론사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을 환영하면서 원고의 중대한 손해 입증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보다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결국 실제 소송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입증해내는 것이 원고 측 변호인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가령 피고가 신문이라면 발행 부수,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클릭 횟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적 주장이 리트윗되거나 재발행된 횟수, 명예훼손적 주장이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된 횟수 등이 모두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개정된 명예훼손법이 중대한 손해를 하한 요건으로 둔 것은 사소한 손해를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 리트윗, 좋아요 표시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손해 요건을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서 디지털 시대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